##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91

발의연월일: 2020. 8. 11

발 의 자: 추경호 · 임이자 · 조수진

정희용 • 윤창현 • 한기호

김정재 · 김희국 · 이명수

박덕흠 · 강대식 · 조경태

한무경 • 윤한홍 • 김승수

의원(15인)

## 제안이유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종전 보다 최대 8~16시간 단축됨.

이에 따라 장시간 근로 관행이 해소되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근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심한 IT · 연구개발 · 디자인 · 설계 등 업종의경우는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종료시각을 자율적으 로 결정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인 정산기 간이 1개월로 제한돼 있고 이에 따라 집중근로가 가능한 기간이 약 2 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의 집중 근로기간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영상콘텐츠 제작 등 업종의 경우는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효율적인 근로시간 활용이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실정임.

더구나 이로 인해 제품출시 지연·소비자신뢰 저하 및 제작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근로자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시간 활용 자율성과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여 근로자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함(안 제52조).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1개월"을 각각 "3개월"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u>1개월</u> 이	<u>3개월</u> -
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	
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	
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	
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산기간( <u>1개월</u> 이내의 일정	2 <u>3개월</u>
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